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4. 12.

번호 제 안 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2200096	박충권의원	2024. 6. 3.	상정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7.16.)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4. 9. 3.)	
전기통신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4. 11. 21.)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726	204726 정부 제출 2024 10. 16 - 소	2004 10 1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11. 20.)	
	2204720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4. 11. 21.)		
	2204820	김현의원	2024. 10. 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 11. 1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4. 11. 21.)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3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

- 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함(안 제32조의11 신설).
- 라. 이동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신설).
- 마.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업자의 불공 정행위를 규율하고,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32조의 13 신설).
- 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 15 신설).
- 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신설).
- 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19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 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 하는 자를 말한다.
-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 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 • 판매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으로, "제26조제1항 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점"을 "판매점"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 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 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 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 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 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①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 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 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 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7(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 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 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5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기간통 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 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의2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와의"를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를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 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 판매점
-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4. 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 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해당 조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해당 조사대상자 의 사무소·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 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를 "해당 조사대상 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 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의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 경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4. 위반행위의 중지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

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3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

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 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 · 제3항 · 제5항,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 · 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 · 제3항을 위반한 행위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②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

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통신단말장치"로 "통신단말장치"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0조의3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3조와"를 "제52조의3, 제53조 및"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 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96조제10호의2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 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 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 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 제103조 본문 중 "제96조부터"를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로

한다.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 적 또는 판매점
 -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 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 리점 또는 판매점
-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 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u>말한다.</u>
<u> <신 설></u>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
	<u>신사업자를 말한다.</u>
<u><신 설></u>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
	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u>를 말한다.</u>
<u><신 설></u>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
	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u>를 말한다.</u>
<u><신 설></u>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
	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
	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

<신 설>

<신 설>

<신 설>

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 한다.

-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
 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
 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
 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 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 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 다.
-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 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 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
 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
 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
 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
 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 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 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 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 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7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한다.

- 1. 2. (생략)
- 3. <u>제22조제5항</u>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u>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u>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
는 대리점 • 판매점을 말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
<u>ॅ</u> हो

거나 <u>제26조제1항 후단</u>을 위 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 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 6. (생 략)

② (생략)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 략)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6</u>
조제1항 후단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
지) ① <u>이동통신사업자</u>
17 © <u>1000111</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 방지 등) ①
1
1.
<u>이동통신</u>
단말장치
<u></u>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 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 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 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 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2.・3. (현행과 같음)
②
<u>판매점</u>
•

같다.

③·④ (생 략)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지하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 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u>이동통신사업자</u>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신 설>

<u>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u> <u>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를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 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 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 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 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 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 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 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 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 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 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 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 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 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 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 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 8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 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 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 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야 한다.
- ①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 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

<신 설>

- 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 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 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 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 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 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 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 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 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 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 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 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 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 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 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 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 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

<신 설>

<u>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u> <u>다.</u>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 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 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 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 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 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7(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 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 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 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

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 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 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 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 를 명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 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 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 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 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 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 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 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 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 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

- 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 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 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 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 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 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 ④ ㅈ (생 략)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 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 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 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 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⑥ (생 략)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전 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

<u> </u>
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
<u>자이동통</u>
<u> 신단말장치</u>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지행위) ①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5. (생략)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고지하는 행위 5의3. ~ 6. (생략)
-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 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8. <u>통신단말장치</u>의 기능을 구현 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5의3. ~ 6. (현행과 같음)
7. <u>이동통신서비스</u>
8. 이동통신단말장치
0. <u>10000000</u>

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 하는 행위

- 9. ~ 11. (생략)
-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해위를 한 거의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 저 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u>의하여</u>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 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9. ~ 11. (현행과 같음)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u>.</u>
③ (현행과 같음)
에51조(사실조사 등) ①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2조의12제1
<u>항, 제32조제13제2항·제3항·</u>

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 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 · 제5항, 제32조의15제2항 · 제3 항 또는 -----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 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 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 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
 를 포함한다)의 대리점·판매
 점
-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 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 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 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③
<u>해당</u>
<u> 조사대상자</u>
④ 해당 조사대상
<u>자의 사무소·사업장</u>
5
해당 조사대상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 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 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 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 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 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 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 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 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 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 2제<u>1항, 제32조의13제2항·제3</u> 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 제5항, 제32조의15제2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 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 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 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 는 내용의 변경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4. 위반행위의 중지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 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 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 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 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 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 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

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 2제1항, 제32조제13제2항·제3 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 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있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 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 조의12제1항, 제32조제13제2항 ·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3 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 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 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 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여부
-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

<u>모</u>

-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 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 수한다.

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 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 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
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신 설>

제55조(손해배상) (생략)

<신 설>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 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 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 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 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 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55조(손해배상)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수 없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 전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u>이동통신서비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u>이</u>
<u>동통신단말장치</u> 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
<u>이동통신단말장치</u>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
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 다.

-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통신단말장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u>통신단말장치</u>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 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통신단말장치</u>의 사용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략)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

1
<u>이동통신단말장치</u> 2
<u>이동통신단말장치</u> ②
<u>이동통신단말장치</u>
 ③
<u>이동통신단말장치</u>
④·⑤ (현행과 같음)

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통신단말장치</u>의 사용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u>통신단말장치</u>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 ③ (생 략)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는 <u>제53조와</u> 제90조에 따라 <u>전기통신사업자가</u> 내야 할 과징 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

의 금지)
<u>이동통신단말장치</u> 이동
<u> </u>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 설치) ①
- <u>이동통신서비스</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u>제52조의3, 제53조 및</u> <u>전기통신사업자 등이</u>

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 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1. ~ 3. (생략)
 - ② ~ ⑤ (생 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저 ① ~ ③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u>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u>
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u>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i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 8. (생략)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 하여 분실 ·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 적으로 분실 · 도난 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 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 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 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 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 치 제조업자

5. ~ 8.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u>통신단</u>
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
할 목적으로 <u>통신단말장치</u>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12. (생 략)

<신 설>

제99조(벌직) 제50조제1항 각 호 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 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 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96조(벌칙)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이동통
<u> 신단말장치</u>
이동통신단말장치
11.·1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호
 제9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

 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 열회사를 포함한다)
-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

- 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 4조, 제95조, 제95조의2, <u>제96조</u> 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
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
외한다)를 한 자
제103조(양벌규정)
-1100.7
<u>제96조,</u>
<u>제96조의2, 제97조부터</u>
<u>.</u>
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의7. (생 략) <u><신 설></u>

<신 설>

-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아니한 자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⑤ -----

------ 부과하고, 제4호의8 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 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 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4의7. (현행과 같음)
- 4의8.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 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 방해하거나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 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 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 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신 설>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 한 자 <신 설>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 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 <신 설>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u>자</u>
<u><신 설></u>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u><신 설></u>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
	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
	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
	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
	게 한 자
<u><신 설></u>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
	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
	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
	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
	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신 설>

5. ~ 8. (생 략) <u><신 설></u>

<신 설>

9. ~ 17. (생략)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 17. (현행과 같음) ----- 제5항제2호의 2·제4호의2·제4호의8부터 제 4호의14까지 · 제4호의17 · 제4

<u>호의18 · 제4호의20 · 제8호 · 제</u>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u>같은 항 제4</u>
<u> 21 · 제17호</u>